

브라질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 및 정책

I. 들어가는말

II. 브라질의 1988년 경제민주화 헌법과
사회보장제도

III. 나가는말

최 대 원

(서울대한-페루경제협력센터소장, 서울대 국제대학원강사)

[특집]

2012년도 특집호는 향후 국가적 의제의 중심이 될
'경제민주화'에 관한 세계 각국의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 들어가는말

브라질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과정은 어느 특정변수만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성격이 있으며, 이를 경제성장과 바로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자의성을 쉽게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브라질이 최근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난 20년간 시행된 경제민주화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의 중심에는 브라질의 1988년 경제민주화헌법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보는 견해 역시 학계로부터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브라질의 1988년 경제민주화헌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몇가지 구체적 이슈를 점검해보고, 향후 브라질이 넘어야 할 과제 중 빈곤퇴치문제를 브라질이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사항을 짚어보기로 한다.

II. 브라질의 1988년 경제민주화 헌법과 사회보장제도

80년대 브라질을 가본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월 20%의 고인플레이션에 실업률은 두자리수에 육박하며, 국가재정은 외채이자 상환에 꼬리를 잡혀 교육, 인프라, 사회복지등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다. 브라질은 70년대 오일쇼크와 이로 인한 달러유동성의 최대 수혜자에서, 80년대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탈바꿈하여 경제성장률이 제자리에서 멈추는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맞는 수난을 겪게된다. 이후 수많은 경제 쳐방전이 나오게 되고, 브라질은 IMF 및 주류경제학자들의 정책시험장으로 변하게 된다.

2010년대 초 브라질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믿겨지지 않을 수 있다. 인플레는 한국과 비슷한 5% 내외 수준이며, 국가재정은 유럽의 여느 국가보다 더 탄탄하며, 무역수지는 흑자인데다 IMF에 오히려 자금을 빌려주는 처지가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90년대만 해도 GDP규모가 한국보다 작았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 브라질의 GDP는 한국의 두배를 이미 초월했다.

2011년 영국을 능가하고 세계 6대 경제규모로 성장한 브라질에 대하여 글로벌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브라질이 2020년에 이르면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2억인구의 20%인 4천만명은 소득수준이 이미 OECD 평균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브라질은 세계은행의 일년예산보다 두배를 더 투자하는 브라질의 BNDES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등 많은 부문에서 우리의 상식과 상

상력을 초월하고 있다.

2012년 12월 Dilma대통령은 향후 수년 내로 브라질의 최빈곤층 1천 6백만 명을 중산층으로 추가편입시킨다는 야심찬 계획과 아울러, 이 인구를 시장경제의 생산활동과 맞물리게 하기위해 앞으로 브라질 전역에 800개의 소공항을 새로이 건설하여 인구 10만 명 이상이 사는 모든 빈곤, 농촌, 저소득 지역을 항공인프라로 커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세계 3대 항공사 제작국이며, 사탕수수로 만든 에탄올을 연료로 하여 비행기를 움직일 계획인 브라질의 경우, 가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브라질 경제부상의 실체와 그 비결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기상예측만큼 분분하다. 통화주의자들은 인플레를 안정시키고 거시경제의 건전성에 기반을 둔 orthodox정책을 두둔한다. 케인즈학파들은 브라질의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정책이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브라질은 한국인구에 맞먹는 4천만의 빈곤층이 최근 10년 이내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social mobility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브라질의 국내경제학자들은 이 두학파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까? 아니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브라질 경제학의 뿌리는 케인즈학파와 신자유주의학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기저가 다른 신구조주의학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브라질경제의 성공은 통화주의와 케인즈학파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구조주의의 처방에 따라 세계경제의 시스템적 모순이 국내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의 속도와 경로를 내부적으로 완충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브라질 신구조주의학파 경제학의 선봉은 누구일까? 브라질 학자들은 까르도주 전 대통령을 주목하고있다. 그가 재무부장관이던 1990년대 초 혜알정책(Real Plan)을 펴 고인플레를 진정시키고, 대통령시절이던 1990년대 중반기에 브라질 재정책임법(Ley da Responsabilidade Fiscal)을 제정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거시정책의 틀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순수 경제학자가 아닌 정치경제학자 또는 사회학자이며 그가 70년대 발전경제학의 한축을 이룬 종속이론의 창시자였던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브라질 경제개혁의 Master Plan은 1990년대 중반에 수립되었고, 이는 IMF도, 시카고학파도 케인즈학파도 아닌 바로 종속이론자였던 까르도주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대통령시절 편 정책은 기존의 종속이론과는 다른 시장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시장친화적정책의 기저는 주류경제학보다는 브라질 발전경제학파인 구조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브라질의 노동당출신인 Lula대통령이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재태동된 브라질의 신구조주의는 브라질경제체제를 WTO하의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면서도 수출의존형 경제의 구축에 올인하지 않았으며,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macro-prudential정책을 견지하였고, 내수시장의 자생력을 늘리기 위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빈곤층이 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빈곤퇴치정책을 구축하게 된다.

브라질은 특히 구조주의정책의 모순인 수입대체산업정책의 한계효율저하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의 일부를 미시정책에 과감하게 받아들인다. 브라질의 거대기업이 거의 국영기업이었던 1980년대에 대비, 90년대에 들어 브라질의 Petrobras, Vale, Embraer등 굵직한 기업들은 민영화의 손길을 비껴나지 못하고 경쟁체제 안으로 수직이동하게 된다. 브라질의 평균관세율이 30% 이상에서 10% 선으로 하향 조정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 것도 199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개방정책은 전술했듯이 unfettered market-based policy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방화와 민영화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가발전식의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주며, 더 나아가 외부효과와 무관하게 지속시켜주리라는 환상속에 불안정적인 불모로 잡혀 있지 않다. 브라질의 경제체제는 1990년대 WTO체제 이후 상당 부분 개방되었으나, 실제 2000년대까지의 행보를 짚어보면 개방보다는 세계경제재편입에의 개혁의 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10년대 초 브라질은 WTO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반덤핑제소국으로 떠오르게되고, WTO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에 TRIPS를 적용한 지적재산권분쟁에 인도를 앞세워 EU를 제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브라질의 경제정책이 과거의 보호주의적 수입대체산업화정책에서 개방형수출지향적산업화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단선적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의 부등형성 변수가 많이 있다. 브라질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15%가 되지 않으며, 80년대 이후 입안된 이래 현재까지 수출가공지역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개방과 WTO, 수출과 경제성장을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적어도 브라질의 경우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된다. 브라질은 한국과 같이 수출의 비중이 50%를 넘지도 않고, 중국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이나 경제특구(SEZ)으로 국내지도가 새로 그려진 나라도 아니다. 그렇다고, 천연자원에 의존하여 1차산품의 상품가격에 사활을 거는 농축산국가라고 보기에는 제조업이 너무 발달해 있다. 브라질은 2006년 자체기술로 우주로켓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어 기초과학면에서는 선진국이다.

그렇다면, 최근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 경제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좀

더 미분해보면 다음과 같은 두개의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브라질 경제의 내생력은 무엇이고, 외생력은 무엇일까? 즉, 내부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글로벌경제의 외부환경에 얼마만큼 적응하고 능동적인가?

바로 첫 번째 질문에 적합한 표현이 경제민주화이고, 두 번째 질문에 적합한 답이 거시건전성정책이다. 이 2가지를 연결해주는 고리는 무엇일까? 브라질의 경우 이는 commodities의 봄(농업의 공업화)과 신산업화(re-industrialization)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1가지라도 결여된다면 브라질의 경제는 다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일례로 2000년대 브라질은 1차산품 가격인상과 중국특수라는 호재를 동시에 맞게 된다. 이로 인해 1차산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공산품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

Lula정권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호재는 지난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중국 및 신흥국의 경기후퇴로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브라질은 1차산품의 특화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고자 신산업화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대브라질계획(Plano Brasil Maior) 등 일련의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완화(QE) 등 자국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Real화 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본통제 수준인 Tobin Tax를 부과하면서 자본의 투기성 유입과 역주행을 조절하고 있다. Guido Mantega 재무부장관의 이러한 집요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e-prudential policy)은 주류경제학계에서 화폐전쟁(Currency War)으로 까지 불리우며, IMF의 비판을 받아 왔으나, 최근에는 IMF조차 이를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 또는 권고하고 있어 브라질의 정책이 비주류에만 머물지 않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을 꼽으라 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단연 브라질의 경제민주화정책을 우선적으로 들 것이다. 내부의 자생력이 튼튼한 상황에서 외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신구조주의의 기조이며, Harvard의 Dani Rodrik(2010) 등의 학자들도 최근 이에 동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브라질 경제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빈부의 격차에 있었다. 역사적인 Path Dependence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인 일회성정책의 시도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극복하지 못하고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Cardoso대통령은 이를 구조적이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990년대 집권한 Cardoso대통령에게 최대의 행운이자 선물은 1988년에 완성된 브라질

의 민주화 헌법이었다. 동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에게는 Social Assistance(사회원조), Social Insurance(사회보험)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Security Security(사회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Social Rights(사회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체계화하고 있다.

브라질 역사상 사회보장의 개념에 기초한 헌법은 1988년 개정된 헌법이 시효이다. 이전까지는 빈곤층에 대한 부유층의 자선, 제한된 의미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등 계층적(stratified)인 사회보호구조가 만연했으나, 동 1988년의 헌법은 이러한 전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방식을 꾀한 최초의 헌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Cardoso 대통령은 이 헌법에 의거, 사회보장법 및 시행령등을 제정하면서, 소위 사회정책의 제도적틀을 위한 Statecraft(국가행위체)를 구성하게 된다. Fleury(2010)는 Titmus(1958), Marshall(1967), Rimlinger(1971), Wilensky(1975), Mesa-Lago(1978), Flora and Alber(1981), Offe(1984), Esping-Andersen(1995), Castel(1995), Filgueira and Filgueira(2002), Filgueira and Luna(2009),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브라질이 동 1988년 민주화헌법 발효이후 Cardoso, Lula, Dilma 등 3대 대통령의 집권 20년간, 브라질의 사회보장시스템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신구조주의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는 Vargas 대통령시절의 1930년대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Corporatism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으나, 부분적이나마 아시아 등 여느 개도국보다도 더 일찍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웃 나라 아르헨티나가 이보다 더 앞서 1904년에 남미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사회보장제도 및 경제민주화의 뿌리가 결코 미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는 1946-63년 기간 동안에는 populism 성향이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4년 집권한 군부는 사회보장대상자를 도시근로자에서, 농민, 자영업자로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를 조기도입해 교육, 보건등의 사회서비스가 영리화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브라질은 1980년대 들어 미증유의 외채위기를 겪으며, social fabric(사회기반)이 붕괴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돌입하게 되고, 결국 군부는 민주화의 바람에 밀려 1980년대 후반 브라질의 현대사에서 물러나게 된다.

브라질은 이때 역사적인 변곡점을 맞게 된다. 1988년 민주화헌법이 수립된 것이

다. 동 헌법 중 여러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지만 본고의 성격상 주목할만한 것은 바로 Social Order Chapter(사회질서에 관한 장)로서 이는 교육, 환경, 문화, 스포츠, 소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다루고 있다. 동 헌법은 사회보장제도를 “an integrated set of initiatives by the Public Powers and society, destined to ensure rights related to health, social security and social insurance (Title VIII, Chapter II, Section I, art.194)”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건강보험, 사회원조등을 시민권의 일부인 universal social rights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브라질의 1988년 헌법은 Social Order를 Economic Order에 대한 종속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전자와 후자를 동등한 별개의 헌법조문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경제질서(경제발전)의 확립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좀 더 부연하면, 사회적 권리를 수행하기 위한 social security budget은 국가예산편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The primacy given to social rights became evident with this autonomy and with the prescription of exclusive contributions for funding social policies. They should be joined in a unique social security budget, created apart from the fiscal national budget.) 즉, 1988년 브라질 경제민주헌법의 요체는 social security budget의 구성을 명시화하고 이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재원은 1999년까지는 3부 각료협의체인 Social Security Council(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브라질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특성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시정부의 3개층으로 decentralized되어 있으나, 전체 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유기체화되어 있어 social fund의 운용이 일원화되어 있고, 매 단계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participatory platform이 구축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시정부와 주정부가 참여하는 Bi-Partite Commission(양자 협의체), 여기에 연방정부까지 참여하는 Tri-Partite Commission(삼자 협의체)등의 제도적 혁신은 브라질의 연방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에 있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지니게 한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Fleury(2010)는 브라질의 1988년 민주화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모델을 “the universality of coverage, the recognition of social rights, and the affirmation of the duty of the state, the subordination of private practices to regulation based on the public relevance of actions and services in these areas, with a new public arrangement of a decentralized public network cooperatively managed by participatory

mechanisms.”¹⁾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건강부문에 적용시킨 제도가 1990년대 초에 도입된 SUS(Sistema Unico de Saude), 즉 통합건강보험제도이다. 동 제도는 여느나라와 미찬가지로 시장경제에 입각한 보건서비스와의 질의 경쟁에서 지난 20년간 부침을 거듭해왔다. 공공재가 지닌 양과 질의 역설이 작용하여, private서비스의 일부는 보완재(complementary)로서, 일부는 대채재(supplementary)로서 작용하면서 공공보건서비스의 공공재(public goods) 벽을 넘나들어 왔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확실한 것은 SUS(통합건강보험제도)의 공공보건서비스시스템은 브라질 전체국민의 70% 이상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빈곤층의 경우 수혜율은 90%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브라질의 빈곤퇴치에 후일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브라질의 경제민주화는 1988년 헌법 이후 제정된 1993년 사회원조법(Social Assistance Law-LOAS)으로 계속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지속적인 현금지급제도 Continous Cash Benefits: BPC- Beneficio de Prestacao Continuada Program에 의거 빈곤계층의 노령화 및 지체부자유자들에게 일정수준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그러나 브라질 빈곤층에게 결정적으로 서광을 준 것은 이러한 지속적인 현금지급제도(BPC) 보다도, Cardoso 대통령부터 구상되어, Lula 정권 및 현 Dilma 정부까지 면면히 내려오는 조건부가족급여(Bolsa Familia)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브라질 1988년 민주헌법에 의거하여 시행된 제도라 한다면, 후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연계에 의해 구성된 사회협의정책의 혁신적 발현이라 할 수 있다. BPC가 회계에 기초한 소득이전이라 한다면, 조건부가족급여(BF)제도는 빈곤층 취학대상 아동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취학조건부로 가족당 수당을 지급하는 브라질만의 유일한 제도이다.

Lula 정권때 집중적으로 시행화된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의 빈곤층 아동취학률을 현저히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실제 브라질은 지난 10년간 약 4천 5백만의 인구가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인구와 맞먹는 수로 브라질 경제가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신용정책과 신산업정책을 펴나가면서 수출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다.

아래 도표는 브라질의 2005년대비 2010년의 경우 브라질의 상류층(Class A+B)이

1) Sonia Fleury (1994), Estado sem Cidadãos: Seguridade Social na América Latina. Rio de Janeiro: Fiocruz Editora; (2011) Building Democracy in an Inequity Society: The Challenge of the Welfare State in Brazil, Fundação Getulio Vargas.

2천 6백만 명에서 4천 2백만 명으로, 중산층(Class C)은 6천 2백만 명에서 1억 명이상으로 늘어난 반면, 빈곤층(Class D+E)은 9천 2백만 명에서 4천 7백만 명으로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 소득계층별 인구분포도: 2005 vs. 2010 (단위:명)

	Class A+B (high-income)	Class C (middle-income)	Class D+E (low-income)
2005년	26,421,272	62,702,248	92,936,688
2010년	42,195,056	101,651,003	47,945,964

자료: Folha de Sao Paulo, 2011년 3월 24일자 자료, Fleury (2011)

현 정부의 Dilma대통령은 이 정책의 승계에 그치지 않고, 아예 브라질에 잔존하는 빈곤을 뿐리ipp겠다는 Brasil Sem Miseria(빈곤없는 브라질)정책을 펴고 있다. 관건은 무엇일까? 약 1천 6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최빈곤층이다. 이들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총체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중산층형성을 꾀한다는 정책이다.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 브라질의 신경제정책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브라질은 OECD회원국이 아니면서도 GDP대비 세율은 35%를 상회하고 있어 OECD국가의 평균세율을 상회하고 있다. 브라질의 신산업정책의 주요정책수단인 공업생산세(IPI- Imposto de Produto Industrial)가 브라질의 주요세원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향후 브라질에서 개발되는 석유가스유전의 이익금을 social fund화 시켜 국부펀드(SWF)의 내수용 사회보장형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는 후퇴할 수 없는 경제민주헌법상의 배수진을 치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주요 stakeholder들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좌충우돌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브라질의 민주화 3대 정권은 지난 20년간 경제의 외부적호재가 내부적 자생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체질개선에 주력해왔다. 브라질의 경제가 순항을 거듭할 경우 신구조주의가 보다 친시장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내재적인 특성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이 반대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신구조주의에 입각한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사회협의구성체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III. 나가는말

본고에서는 브라질의 경제민주화과정중 일부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헌법 및

사회보장법, 그리고 제도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는 브라질의 1988년 경제민주화헌법에 기초하여 재정립되었다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80년대의 사회보장제도 모델이 실패한 후, 1990년대 민주화의 과정에서 브라질은 neo-corporatist모델로 회귀(중남미 민주화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듯)하지 않고, 경쟁정책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2000년대 시민사회의 생산적인 참여라는 변수를 전체적인 Statecraft의 방정식에 편입시킴으로서, 국가개입의 경직성(government failure)을 유연화시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브라질의 경제민주화는 결국 헌법에 기초한 Lex Constitucionalia를 통하여 제도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은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의 외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Lex Mercatoria로 관철하고 있음을 주지할 수 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우리와 상황이 다르기에 사고도 다를 수 있는 브라질의 경제법 및 제도,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기대해본다.